

농산물 유통정책 추진 방향

김영만 (농림부 유통정책과 과장)

I. 추진 배경

- 수차례 결친 유통개선대책을 통해,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충되고, 거래 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전반적인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아직도 「고비용·저효율」 구조
 - '94-'97년간 유통부문에 2조 5천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생산자·소비자가 피부로 느낄만한 개선효과 미흡
- 특히, 그동안의 유통개선대책이 관련제도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보다는 공영도매 시장 중심의 기본틀 속에서 시설확충에 치중한 결과, 급격한 유통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 - 현재와 같은 공영도매시장 위주의 경직된 정책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
- 또한,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사업도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불가능
 - 영세한 영농구조체제하에서 농가소득지지와 생필품인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농산물 유통 개혁은 시급한 과제
⇒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의 틀과 제도를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유통개혁을 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제고를 뒷받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

II.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

1.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

-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대형유통업체 진출 가속화
 - '96. 1월부터 외국인 투자 소매점포수와 매장면적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철폐
 - 막강한 자본력과 현대적 경영기법을 바탕으로 한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시장 본격 진출 및 국내 소매단계 유통업체도 대형화 촉진
- 정보통신기술 발전
 -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유통을 망(network)으로 긴밀히 연결
 - economies of scale → economies of scope → economies of network
 - 유통기구간 수평적·수직적 연결을 통해 유통경로 단축과 유통물량의 규모화를 통해

유통비용을 절감

- 유통업체간의 권력관계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많은 쪽으로 이동

□ 공급측면

- 생산시설 현대화·첨단화, 재배기술 발달, 다양한 품종개발, 수입증가 등으로 생산통제 가능성과 과잉공급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
- 소비자기호 및 표준규격화된 대량유통체계에 맞는 생산체계 구축가능

□ 소비측면

- 식품소비에 있어 품목의 다양화, 고급화 경향
- 농산물의 안정성 등 고품위 농산물에 관한 관심 증대
- 자가용 보급확대로 소비자의 이동성 증가

2.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통변화 전망(정책적 시사)

□ 농산물 유통경로의 변화 : 도매시장 중심에서 도매시장, 물류센타, 광의의 직거래 등으로 유통의 중심경로가 분산

※ 미국 : 도매시장 1/3, 물류센타 2/3

- 물류센타의 시장점유율 변화정도와 속도는 산지에서 표준규격화와 브랜드화의 정도, 소비자 소매점의 대형화, 체인화 진전속도에 좌우

⇒ 물류센타 조기확충, 직거래망 확대 등 유통경로 다원화

□ 유통업체간 권력구조의 변화

- 소비자 지향적 시장구조가 확립되어 POS(Point of Scales)에 의한 소비자 정보 획득이 용이한 대형소매기구의 권력이 강화
 - 생산자조직에 대한 유통업체 특히 대형소매업체가 시장주도권 장악
- ⇒ 고품질 규격농산물 생산 및 생산자의 판매력(Bargaining Power) 증진이 주요 정책과제화

□ 유통기구간 기능변화

- 계약재배와 계약거래 등을 통한 수직적 결합화대로 수점상, 도매상 같은 중간 상인의 기능약화, 직거래 확대
- ⇒ 유통경로 다원화, 도매시장의 효율성증대 및 시장내 비용절감이 시급

□ 농산물 수입 증대 가능성

- 소비자 기호의 고급화·다양화로 외국산 농산물 선호경향 증대
- 외국유통업체 진출이 늘고 유통경로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대량 규격출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 증대

□ 산지에서의 표준규격화 촉진

- 수입농산물 증가와 대형소매점 확대는 표준규격화를 촉진하도록 생산자에 압박하고 요구에 따르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탈락
- ⇒ 물류표준화, 규격출하 등 저비용 대량유통체계 형성 추진

□ 농산물 거래방식의 변화

- 물류표준화, 정보통신망이 확립되면 실물확인 후 경매 또는 수의 매매 하던 것이 통명 거래, 전자거래로 전환

⇒ <통명거래 조건을 조속히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>

- 생산단위의 규모화와 생산자 시장교섭력 증진
- 표준규격화 및 브랜드화의 촉진, Cold Chain System의 확립
- 신속·정확한 전국 유통정보망의 확충
- 신용거래제도의 확립

□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자조직 역할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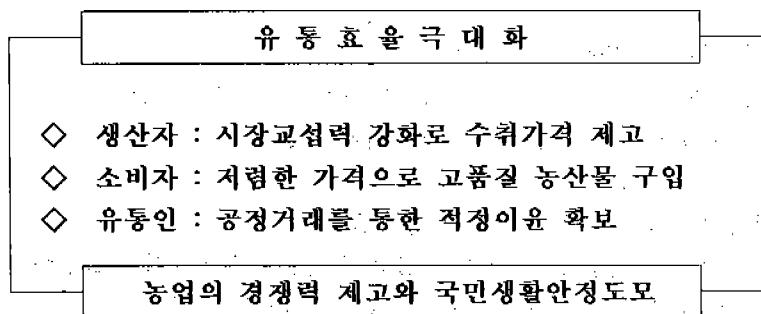
- 생산의 전문화로 상품가격 변화에 따른 생산농가의 위험부담 가중
 -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에 대항하여 생산자 권리보호
- ⇒ 가격안정프로그램의 적극개발과 이를 운용·실천할 수 있는 생산자조직의 규모화와 질적 내실화

□ 농산물의 생산·유통의 소비자 지향성에 따른 차별화 강화

- 저비용 대량유통체계 형성과 병행하여 구매력이 높은 일부 소비층의 수요에 맞춰 농산물 생산·유통에 있어 차별화 추세 강화
- ⇒ 환경농산물, 브랜드 촉진, 품질인증제, 자리적표시제 등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·유통과 소비자정책 강화

III.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

<추진목표>



<추진방향>

-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유통의 비 능률을 과감히 제거
- 확충된 유통시설을 바탕으로 유통경로 다양화, 도매시장 제도개선 및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부문 개선에 중점
- 경쟁 제한요소를 최소화하고 민간업체의 유통참여 유도로 유통경로간, 유통주체간 경쟁여건 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전환

- 지역별, 품목별 여건에 따라 관련제도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실효성을 제고
- 중앙정부는 각 유통주체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, 지방자치 단체·생산자단체·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
- 각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농산물 유통추진체계를 확립하고, 생산자단체가 유통개혁에 전력 투구도록 체제개혁 독려

IV. 중점 추진시책

1. 농산물 직거래 제도화 등 유통경로 다원화

- 농산물유통은 특성상 수집과 분산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구조적으로 유통단계가 많고, 유통마진도 과다하게 발생
 - 유통단계와 유통마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통경로개발 필요
- 최근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새로운 유통 경로로 정착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 - 직거래장터 등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고 있으나, 아직은 생산자단체의 직판행사적 성격이 강함
- 새로운 선진 직거래형태의 유통시설인 물류센타는 2개소 개장에 불과하여, 도매 시장 유통경로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역부족
 - 물류센타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도·소매 기능을 병행하고 있으나 일반유통업체의 가맹점 확보로 도매기능 활성화 필요

□ 유형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 직거래 추진

- 대도시에 규모화된 직거래장터(500평이상) 개장('98년 50개소)
- 중소도시에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민시장(Farmers' Market) 개설 (2001년까지 150개소)
- 생산자단체의 소비자 직판을 규모화·대형화하여 효율화
-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협동조합간 직거래 활성화
- 전자쇼핑몰·통신판매 등 무점포 방식의 새로운 직거래 경로 개발

□ 물류센타 조기 확충으로 새로운 직거래망 형성

-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현행 도매시장을 통한 5~6단계의 유통단계를 3~4단계로 축소
- 주요 소비지 거점을 중심으로 물류센타 확충
 - 이미 계획이 확정된 12개소의 물류센타(개장 2개소, 건설중 10개소)는 2001년까지 차질없이 개장
 - 현재 건설되고 있는 일부 공영도매시장중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물류 센타로 전환(고양, 성남 등)

- 대도시 주변 농·수·축·임협 공동으로 직거래형 물류센타 추가 건설('99년 중 2개소)
- 물류센타와 산지출하처 및 소매점을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전자상거래(EDI/EC) 시스템 구축

□ 물류센타건설 투자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건설방식 도입

- 지방자치단체가 건설(지자체 소유)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민간유통업체에 운영 위탁하는 「공공소유·민간운영」 방식도입('99년 2개소)
 - 건설비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유통단지에 건설을 추진하고 개발 제한구역내 건설허용도 강구(건교부와 협의 추진)
 - 민간의 물류센타 건설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지원조건 완화
 - (당초) 건설비 60% 읍자 → (개선) 총사업비 80% 읍자
- ⇒ 직거래 비율을 2001년 25%수준까지 제고하여 새로운 유통경로로 정착시킴으로써 유통경로간 경쟁촉진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 유도

2. 공영도매시장 개혁

-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장경매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시장별,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인 제도운용으로 당초의 제도도입 목적달성이 미흡하고 부작용이 발생
 - 대도시 도매시장의 일부 품목 및 일부 지방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가 제대로 안되어 기록상장과 담합경매가 이루어 지고 있어 제도보완 필요
 - 도매시장 관련 관리업무(도매시장의 상인 인허가 및 취소, 거래질서 유지, 시설물 관리 등)와 운영업무(수탁판매, 대금결제 등)가 관리공사나 도매시장법인으로 이원화되어 유통비용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음
 - 중도매인이 사실상 특정법인에 종속되어 있고, 도매법인별 독립된 시장기능 수행으로 경쟁체계 구축에 저해

□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화 인정

-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도매상 제도도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
 - 주요 중앙도매시장은 공정한 기준가격 결정을 위해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되, 시장 여건,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의매매 품목의 단역적 운용
 - 지방도매시장은 경매제나 도매상제 중 개설자가 자율선택
- 품목별 도매상제를 도입하여 전문도매상의 정착을 유도
 - 출하자가 원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경매도 허용함으로써 거래제도 다양화

□ 도매상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

-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상 개념
 - 생산자(또는 중간상인)로 부터 농산물을 매입(수탁은 예외적으로 허용)하여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일정한 규모를 갖춘 법인화된 상인

○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

- 출하자의 송장 작성 및 도매상의 품목별 기준가격 고시 의무화
- 도매상에 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적인 보고 실시
- 대금정산의 안정성을 위한 방안 강구(정산제도 설치 등)

○ 기장의무나 보고의무 태만시 제재방안 마련

□ 도매시장 관리·운영 일원화 시범도입 유도

- 건설중인 16개 도매시장 중심으로 관리·운영 일원화를 시범 도입하되, 도입시장에 대해서는 건설비, 출하촉진자금, 하역기계화 등을 우대 지원

□ 도매시장 정책 및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상설 「심의기구」를 중앙 및 개설자별로 설치

- 농림부에 생산자·유통인·소비자·학계, 언론계대표 등으로 구성된 「전국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」를 설치
 -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개선, 공영도매시장 평가결과 심의 등
-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별로 「시장관리운영위원회」 설치·운영
 - 거래제도 선택, 수의매매품목 선정, 상장수수료·하역비 결정, 비포장·비파렛트 출하품 반입제한 등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
 - 수의매매 품목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출하자 의견수렴 방안 강구

□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유사시장의 체계적 관리

○ 경매제도의 효율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

- 전자경매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
- 「선취매매」, 「견본경매」의 실용화를 적극 유도

○ 정산회사 설립 검토 및 거래 보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중도매인의 실질적인 범위 소속제를 해소

○ 도매시장 불법행위 제재와 감독기능 강화

- 불법행위에 대한 개설자의 관리·감독기능 강화
- 중도매인의 접포불법전대 일제조사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

○ 유사시장을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하고, 책임관리제 도입

- 2001년까지 16개공영도매시장 추가건설로 유사도매시장(22개)을 흡수
- 기타 유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리제 도입

□ 공영도매시장의 고비용구조를 타파하여 거래비용 최소화

○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를 도매법인 경영합리화, 시장사용료 인하, 장려금 인하 등을 통해 상장수수료 1%P 수준 인하(연간 350억원 수준)

○ 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자로 부터 도매법인이나 도매상으로 전환하여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, 하역기계화 촉진

○ 공영도매시장의 도·소매 분리, 하역기계화,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개보수 추진 및 가락시장 이전계획 추진으로 시장구조 혁신

○ 출하자등록제 및 출하예약시스템 도입

- 도매시장관련 조직과 유통종사자의 구조조정
 - 도매법인수 축소 등 법인의 구조조정과 중도매인 법인화 유도

3. 산지유통 혁신과 고품질·안전농산물 공급

-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산지에서부터 규격화하여 대량으로 출하하지 않으면 유통단계 축소나 물류비 절감이 불가능
 -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비율이 35% 수준에 불과
 - 산지유통시설이 확충되었으나 농가와의 연계 체제가 부족하고, 판로확보의 애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 가중

- 농협이 산지유통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체제 구축
 - 산지단위농협 합병을 농산물 유통사업의 규모화·전문화 실현 기회로 활용
 - 산지농협수 : ('97) 1,286개 → (2001) 800개 → (2004) 500개
 - 「산지유통시범농협」을 선정, 집중 지원하여 산지 유통의 거점역할 수행
 - 시범 농협을 중심으로 공동규격출하·공동계산제 및 직거래 등 선진화된 산지유통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전농협으로 확산
 - 산지유통시범농협 : ('98) 60개소 → (2001) 150개소
 - 포전매취와 가격동락이 심한 채소류의 농협 계약재배 확대
 - 주산지 중심으로 관내 생산량의 20~30% 계약재배하여, 공동출하
 - 우수 작목반을 육성하고 부실 작목반을 정비하여 내실화
 - 생산자조직의 공동출하비율을 현재 35% 수준에서 2002년 60% 수준으로 높이고, 단순 공동수송에서 공동선별·출하·계산체제로 발전
-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
 - 2004년까지 산지유통 거점지역에 농산물 포장센타 228개소, 미곡종합처리장 400개소, 축산물종합처리장 12개소를 건설
 - 기존 농산물집하장(3,290개소)중 규모가 큰 곳에 선별기, 포장기 등을 지원하여 소규모 포장센타로 육성
 - 포장센타 운영주체와 대형유통업체간의 계열화체제 구축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
 - 산지공판장에 경매시설보완과 병행하여 선별·포장·저장시설도 지원하여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지유통시설로 육성
 - 포전경매 및 산지 창고경매체 활성화
- 산지 가공공장 건설 목표 축소 및 지원방식 개선
 - 기존 가공공장의 경영내실화에 중점을 두되, 신규건설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효과가 큰 특화품목의 주산지 위주로 선별지원
 - 당초 2,000개소 건설목표에서 1,500개소 수준으로 축소 조정
 - 경영능력이 있는 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'99년부터 건설자금의 보조률 중단('98: 30%)하고 저리융자(70%)로 전환

□ 산지에서의 농산물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

- 안전성 조사품목을 확대(58개→120개)하고, 조사지역도 확대
- 고품질 농산물 및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확대(85개→120개)
- 농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제 도입 및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표시제 도입
- 유기·무농약·저농약 농산물 등 환경농산물 품질관리 기준 체정

4. 농산물 물류 및 정보체계 개선

- ◇ 농산물의 출하단위, 수송단위, 판매단위가 표준화 되지 않아 기계화·자동화·정보화가 어렵고, 물류비가 과다.
 - 농산물의 수송차량 단위가 적고, 하역기계화를 위한 시설·장비가 부족하며, 대부분의 농산물이 비파렛트로 출하
 - ◇ 생산자의 출하의사 결정에 필요한 유통정보 지원체계 미흡
 - 유통정보가 주산지별·등급별로 분석되지 않고 단순평균가격으로만 제공하여 활용도가 낮음

□ 농산물 규격포장화로 물류개선 기반마련

- 124개 농산물표준출하규격을 단위화물적재시스템(ULS)에 맞게 정비하고,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규격 개발 확대
- 농산물의 규격포장화 및 브랜드화 유도
 - 무·배추·파 등 포장출하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끌판지상자 뿐만 아니라 프라스틱상자 지원 등 지속적인 포장화 추진
 - 농산물 고유브랜드 확대로 신용판매제도의 정착
- 비포장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반입 제한 추진
 - 도매시장 내에서 포장품과 비포장 출하품의 차별 강화
 - 단계적으로 공영도매시장내 비포장농산물의 반입제한 추진
-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속박이를 근절하고 규격화 촉진
 - 생산자조직의 자율검사체계 구축 및 생산자실명제 도입

□ 일관수송 및 하역기계화 체계 구축

- 단위화물적재시스템(ULS)규격에 맞는 차량 지원
- 지게차, 파렛트 등 수송·하역기계화 장비 보급 확대
 - 하역기계화장비 보급을 유통시설 개보수와 통합 지원하고 지원 조건도 우대(융자 80% → 보조 50%, 응자 30%)
- 파렛트 출하품에 대한 하역료면제 및 도매시장 하역요율체계 조정으로 파렛트 적재출하 촉진
- 효율적인 파렛트 회수관리를 위하여 농협과 한국파렛트풀(주)간 연계 추진

□ 농산물 저온유통체계(콜드체인시스템) 구축

- 콜드체인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 확대

- 신규 유통시설 지원시 저온·예냉 시설과 저온수송차량의 지원을 포함하고, 기존시설에는 저온보관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
- 도매시장내의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
- 쿨드체인 농산물 포장상자에 「예냉처리」 표시를 품질인증제와 병행 추진하여 수취 가격 제고

□ 출하자중심의 농산물유통정보 개선

- 단순평균가격 제공에서 산지별, 시기별 물량·등급·가격 등 출하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전문유통 정보제공으로 발전
 - 장기적으로 생산정보와 연계시켜 농산물출하조정시스템 구축
- PC공급확대, 농업전용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 유통정보화 기반의 구축
- 유통업체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코드, 거래서식을 '98년중 표준화하여 유통정보화 S/W 확충
- 2004년까지 12만 전업농 전원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

5. 수급 및 가격불안정 해소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가격전폭이 큰 체소류에 대해 다양한 가격안정대책이 추진되었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WTO체제 출범, OECD가입으로 가격경쟁에 정부개입 한계 □ 수급조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농업관측제도가 미비하고, 생산조정과 연계되지 못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업관측 및 유통예고, 유통정보 등 상황판단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·분석·제공하는 농업관측체계 미정비 |
|--|

□ 체소류·우유 등의 「유통협약」 및 「유통명령제」 도입

-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조직화 되어 있고, 주산지 생산비율이 높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(감귤, 고랭지배추, 우유 등)
 - 저급농산물 출하규제 등 사업추진이 쉽고, 관리가 쉬운 사업부터 추진하고, 재배면적 조정, 출하량조절 등 사업까지 확대
 -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, 필요시 미국과 같은 농민투표 검토
- 유통명령대상 농산물의 생산자·출하자 전산관리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
- 과잉생산 우려시 정부가 생산·출하조절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에 호응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 보상하는 「정부주도형 유통명령제」 도입 검토

□ 생산·출하조절기획단 설치 운용

-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명령 시행이 어려운 농산물의 생산·조정 출하조절 사업 추진을 위해 「생산·출하조절기획단」 설치·운영
 - 중앙 및 주산단지 시·군에 생산농업인·협동조합·자치단체·관련 유통인 등으로 구성
- 과종기에 수요 및 재배전망 예측에 의한 과종면적 차율조정하고, 수확기에 과잉생산

시 저급품 자율폐기와 출하조절 등 사업추진

□ 가격폭락시 시장 자동개입 시스템 구축

- 무·배추·마늘·양파 등 주요채소류의 도매시장 가격이 경영비의 80% 수준 이하로 3일 이상 유지시 정부가 자동개입하여 수매
 - 수매물량과 연계하여 유통명령하고 이행농가에 대해 우선 수매

□ 주산지 중심으로 채소계약재배 확대

- 계약재배자금을 확대하여 계약재배 물량을 일정수준까지 확대
 - 계약재배자금 : ('98) 2,865억원(6%) → (2001) 4,500억원수준(10%)
- 주산지중심으로 20~30% 계약재배가 가능하도록 주산지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자금 집중지원('97 지원조합 405개)

□ 수집상의 포전매매에 대한 감독 강화

- 포전매매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수집상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계약서 내용 개정('98)
- 계약 미이행 수집상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

□ 농업관측을 내실화하고 수급조정과 직접 연계

- 정부와 생산자조직의 농업관측 기능 강화
- 농업관측시 현행 주산단지 표본농가 조사에서 최근 재배면적 분포 등을 고려, 현실에 맞게 설계하여 신뢰도 제고
 - 생산자조직도 지역별 관측정보를 조사하여 생산·출하조정에 활용
 - 수집상, 도매시장 유통인, 종자판매상 등을 농업관측에 참여
- KREI 중심으로 관측정보 분석·분산기능 강화
 - 유관기관에서 조사된 관측정보를 KREI에서 종합·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측의 전문성과 정확성 제고
- 농업관측 결과에 따라 품목별 전국조직에서 생산조정, 출하조절 실시하는 연계체계 구축

□ 수급안정의 주체로서 전국 품목별 조직 육성

- 품목별 전국조직에 사업농협 이외 작목반연합회, 법인등 생산자조직의 사업참여 확보
 -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을 생산·출하조정, 공동계산의 핵심단위로 육성
-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전담한 「채소수급안정사업단」을 농협중앙회에 설치하되 「품목별전국협의회」의 심의 결정한 내용을 집행
- 지역단위(읍·면→시·군) 작목반연합회 등 생산자조직을 결성운영
 - 주산지의 품목별 우수작목반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연합조직체 육성

V. 유통개혁 투자의 대폭 확대

□ 타 분야 농림예산을 절감하여 유통분야에 집중투입

- 공공유통사업 투자를 현 수준보다 대폭 증액(국고기준, 연평균)
 - ('98) 3천억원 → ('99) 5천억원 이상

※ 농림 투융자예산액 중 비중 : ('98) 6.5% → ('99조정) 15%수준

□ 유통시설 신규 추가건설은 가급적 억제 또는 최소화하고 당초 목표대로 건설될 수 있게 지방비 부담 지원 및 지원조건 강화에 중점

- 간이집하장, 도매시장, 미곡종합처리장, 농산물가공공장 등은 신규 추가건설이 없거나 최소한 증가

※ 도매시장 국고지원율 : 30~50% → 70%

- 추가확대 건설은 신유통체계 형성 또는 「공공소유·민간운영」방식의 투자방식 도입에 국한

- 물류센타, 직거래시설, 포장센타, 생협조합 물류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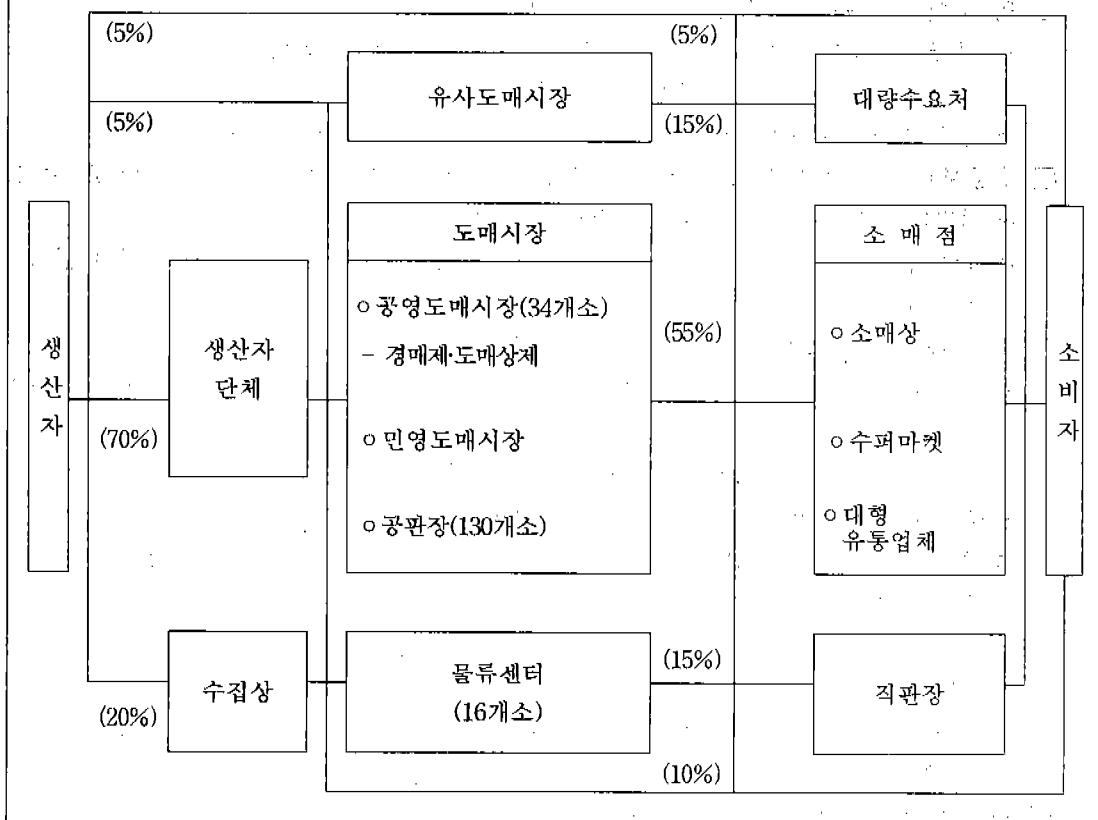
□ 유통효율화를 위한 지원은 최대한 강화하되 지원조건 대폭 개선

- 하역장비·파렛트 지원을 위한 물류표준화 사업량을 확대(120개소→292)하고 지원조건도 개선(융자 80%→보조50, 융자 30)
- 농산물 규격출하, 포장개선도 사업량을 각각 28%, 56% 늘리고 단가 및 국고지원비율(포장개선:200→500원/매) 상향조정
- 기존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, 저온저장고 시설확충사업(210억 원) 및 저온유통기반 확충('98억 원)에 신규투자

□ 농산물 유통정보망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

- 농업전용통신망, 전자상거래, 전자경매시스템 등 정보망 구축
- 출하전략정보시스템, 농업관측센타 등 유통정보체계 확립

2004년 농산물 유통모습



- ◇ 산지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계약체결된 농산물을 규격화, 브랜드화하여 대량으로 공동출하함에 따라 생산자의 시장 고접력이 강화되고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기반 마련
- ◇ 주요거점지역에 34개 공영도매시장, 16개 물류센타가 개장되고, 유사도매시장이 제도권으로 흡수될 뿐만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따라 출하자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,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질서가 정착
- ◇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단체·대형유통업체와의 다양한 직거래체제가 구축되고, 생산자단체의 소비자 직판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농산물 구입
- ◇ 산지에서부터 소비자시장까지 패스트에 의해 수송, 지게차에 의해 하역되고 패스트별로 경매, 소비자 대형유통매장까지 운반된후 진열·판매되는 일관체계와 냉장유통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물류비용을 30% 수준 절감하고, 고품질 농산물 공급

농산물 유통비용 6조원 절감

농축산물 유통개혁 지표

	단위	'97	2001	2004	비고
<산지유통>					
○ 생산자단체 공동출하 비율 (산지유통시범농협)	% (개소)	35 (30)	50 (150)	70 (150)	농 협
○ 포장센타 출하 비율 (농산물포장센타) (소규모포장센타)	% (개소) ("")	8 (78) (269)	15 (160) (1,000)	30 (220) (1,000)	간이집하장전환
○ 미국종합처리장 처리비율 (RPC)	% (개소)	20 (235)	30 (350)	40 (400)	
○ 축산물종합처리장 처리비율 (LPC)	% (개소)	- (-)	25 (10)	30 (12)	
○ 가축시장 출하율 (가축시장)	% (개소)	19 (143)	20 (93)	20 (77)	일반45 대형32개소
<도매유통>					
○ 공영도매시장 경유율 (공영도매시장) (소비자공판장) (법정도매시장)	% (개소) (“ ”) (“ ”)	45 (17) (31) (16)	55 (34) (48) (6)	55 (34) (48) (6)	청과기준
○ 물류센타 경유율 (물류센타)	% (개소)	- (-)	13 (12)	15 (16)	광의직거래
○ 유사시장 경유율 (주요유사시장)	% (개소)	48 (50)	20 (28)	15 (28)	
<소매유통>					
○ 직거래 비중	%	7	12	15	협의직거래
<물 류>					
○ 농산물 유통량	만톤	3,500	3,850	4,080	농·축산물
○ 유통비용	조	19.3	16.0	12.8	△34%절감
○ 산물출하채소포장출하 비율	%	10	50	90	그물망 포함
○ 파렛트적재 출하비율	%	-	30	70	
○ 하역기계화 비율	%	-	30	70	

-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포장식품의 연포장 적용사례